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모색

2009. 11

- 일 시 : 2009년 11월 13일(금) 10:00~11:3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1층)
- 주 최 :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워크샵 안내

♣ 개요

- ◆ 주 제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모색
- ◆ 일 시 : 2009년 11월 13일(금) 10:00~11:30
-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1층)
- ◆ 주 최 :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 목 적

-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정책동향 및 향후 지역위 일정 안내
- ◆ “기초생활권 컨설팅 지원단” 안내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소개
-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컨설팅 수요 파악

♣ 진행 순서

- | | |
|-------------|---|
| 09:30~10:00 | 등 록 |
| 10:00~10:25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정책동향 및 향후 지역위 일정
임운수 사무관(충남도 균형발전담당관실 균형개발담당) |
| 10:25~10:35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상욱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10:35~10:50 | 기초생활권 컨설팅 지원단 소개 및 운영계획
김정연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관률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10:50~11:30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관련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

제1주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주요동향 및
향후 지역위 일정

임운수 사무관(충남도 균형발전담당관실 균형개발담당)

기초생활권계획 이해 및 주요 사항

□ 기초생활권계획의 개요

- **계획 성격** : 법정 자율계획, 5년 단위실행계획, 전략적 종합계획
 - * 지역발전5개년 계획과 연계(시군· 시도 발전계획(자율)을 반영하여 광역발전 계획 수립, 실질적으로 계획수립 필요)
- **계획 기간** : 2010 ~ 2014
- **계획 범위** : 광특회계 + 지방비, 일반보조사업, 기금, 민자사업 등
 - * 시· 군이 5년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구상

□ 기초생활권계획 주요 권장 사항

- 지역여건분석, 새로운 지역자원 발굴·산업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화발전계획으로 구상
- 사업대상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등 계획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
- 가능한 개조식으로 간략하기 기술(최대 200쪽 범위내로 작성 권장)
- **시군내 사업간 연계(시설복합화),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강화** → 우수계획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반영 등 인센티브 강화
- 도시계획, 중기재정계획, 시군발전 계획 등 기존의 다양한 계획 등을 참조하여 계획수립
 - * 기존계획을 참조하여 5년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의 사업의 종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본 계획의 핵심으로 이해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수립**
 - *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안정적인 지역개발 추진 근거 마련(지역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책임성 강화 및 지속적인 정책 추진)

○ **시·군간 공동계획 수립 적극 권장**

- * 특히, 시군간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자율적으로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수립 차원에서 검토 후 추진

□ **계획수립 등에 따른 인센티브**

○ **기초생활권계획이 지역위의 지역발전사업 평가와 연계**

- 시·도, 시·군은 계획수립으로 사전에 다양한 평가자료 준비 가능
- * 지역위에서 평가지표로 고려중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연계성, 평가자료 준비성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 가능

○ **기초생활권계획 관련 경진대회 개최('10. 4월)**

- 시도별 지역예선 등을 거쳐 우수계획 및 우수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수여 및 신규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0. 10월)**

- 계획에 따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시도별 지역예선 등을 거쳐 발굴)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
- * 시도별 기초생활권정책 홍보관, 우수지자체 전시·발표 기회 제공
- 우수사례 방송홍보·사례집 발간 등 전국적인 홍보 실시

□ **기타 협조사항**

○ **시도별(또는 광역경제권별)로 시군의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시도의 장기적인 발전구상과 시군 기초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촉진제기 마련 등
- * 예)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기초생활권 유형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연구” 추진 및 수시회의 개최 등 계획수립 지원·모니터링 실시

○ **광특회계 중 시·도 자율편성 재원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추진**

- 시·도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강화, 향후 광특회계 평가시 반영(*단순하게 시군별 균등배분 지양 등)

기초생활권 관련 향후 주요 일정(안)

일정	주요 내용	비고
‘09. 10	- 기초생활권계획 교육(시군 사업담당자)	
‘09. 11	- 기초생활권계획 1차 컨설팅 - 기초생활권계획 관련 경진대회 계획수립 - 기초생활권계획 평가체계 개발	
‘09. 12	- 기초생활권계획 2차 컨설팅 - 기초생활권계획 평가방안 시달 - 기초생활권 관련사업 경진대회 계획 수립	
‘10. 1	- 신규 광역 연계·협력사업 발굴(광역위, 지자체, 공공기관) - 지자체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상황(시도 → 지역위)	
‘10. 2	- 기초생활권계획 제출(지자체 → 지역위) - 광역 시행계획(지역개발계정사업 포함) 평가 제출(광역위 → 중앙기관장, 지역위)	
‘10. 3	- 기초생활권계획 평가 - 신규 광역 연계·협력 사업 선정(지역위)	
‘10. 4	- 기초생활권계획 관련 우수사례 포상 * ‘11년 연계·협력사업 등 중점 발굴	
‘10. 5	- 지역개발사업 심사 결과 처리(지역위 → 대통령, 중앙기관장, 시도)	
‘10. 6	- 광특회계 등 예산편성 의견 통보(지역위 → 재정부, 국과위)	
‘10. 7	-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계획 시달(발표, 포상, 전시 계획 등)	
‘10. 8	-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 우수사례 공모	
‘10. 9	-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 우수사례 발굴, 선정	
‘10. 10	-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0. 11	- 기초생활권 우수사례집 발간 등 홍보	
‘10. 12	- 기초생활권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Q&A

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성격과 위상은?
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법정 자율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가?
3. 정부가 구상하는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무엇이며 발전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4.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은?
5.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광특회계사업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타 회계 사업도 포함해야 하는가?
6. 타 회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매우 방대해지는데, 어느 사업까지 포함해야 하는가?
7. 향후 계획수립 컨설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8.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은?
9.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매뉴얼에 소개하는 목차등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가?
10.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타 계획과의 관계는?
1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의 실무적 작성 주체는?
12. 포괄보조금이란 무엇인가?

13. 이번에 도입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본구조는?
14. 그렇다면 이번에 도입한 포괄보조금의 운용구조는?
15.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에 대한 예산 신청은?
16.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17.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이외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는?
18. 배분된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선택의 자율성은?
19. 부문간의 경계가 모호한 사업들이 많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초생활권 재량으로 정책 부문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20. 24개 사업군별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다른가?
21. 1개 단위사업의 예산 범위에 제약이 있는가?
22. 세부사업 기획 기능이 기초생활권에 있고, 포괄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안되는 사업’은 없는 것 아닌가?
23. 24개 사업군은 칸막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24. 24개 사업에 제시되지 않은 특수한 사업의 경우는 계획에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가?
25. 2010년 이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26. ‘성장촉진지역’은 어디이고, 추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성격과 위상은?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 자율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하 “기초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균특법은 제4조에 법정 의무계획으로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또한,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은 시·도발전계획과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 5조제 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 6조제 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따라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구성은 전적으로 기초생활권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보조를 받는 지역개발사업의 투자계획이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법정 자율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가?

- 가능하면 모든 기초생활권이 수립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앞서 설명했듯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시·도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밑그림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아울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포괄보조금의 전면 도입으로 실천적 전략계획을 요구함에 따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포괄보조금은 종전 200여개 지역개발사업을 24개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 보조금이다.
- 이것은 포괄보조금이 도입됨에 따라 시·군도 사업의 선택과 추진방식 등 지역개발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음을 말한다. 즉, 포괄보조금은 비단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계획권의 신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 재정운용, 지역개발계획 등 시·군의 권한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요구한 기준과 내용에 맞춰 의무적으로 수립했던 관행을 탈피하고,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자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조적인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법정 자율계획으로 규정한 것은 ① 유사한 법정계획의 난립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예방, ② 의무계획으로 인한 ‘계획을 위한 계획’을 예방하고 실천적이면서 차별화된 계획수립 유도, ③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추진기반 구축에 그 취지가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권의 차별화된 발전을 위해 일선 공무원스스로가 진지하게 고민하여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3. 정부가 구상하는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무엇이며 발전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이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을 지향한다면 기초생활권의 비전은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을 창조”하여 “국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최저한의 삶의질을 보장”에 두고 있다 (9.16 국정보고).
- 이를 위해 획일적, 무차별적인 물량 위주의 지원 보다는 지역의 발전단계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 도로, 상하수도, 교량, 공공시설 신축 등 H/W적인 물량 투입은 가급적 사양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개발, 소득창출기반 확대, 연계·협력사업 촉진, 의료·복지 전달체계 개선, 교육경쟁력 강화 등 S/W적인 발전전략도 중시하고 있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사업들을 체계화 한 전략계획이다.

4.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은?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취지 중 하나가 광특회계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과제고에 있으므로 당해 시·군이 구상하는 광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①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 각종 부존자원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사업, ②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③ 복합 공공시설물 신축·확충사업, ④ 향토산업 및 지연산업의 고부부 가치화 등이 중요하다.
- 광특회계 이외 타 회계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① 리더양성 및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역량강화사업, ②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③ 의료·복지사업, ④ 상·하수도, 환경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다.

5.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광특회계사업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타 회계 사업도 포함해야 하는가?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최저한의 삶의질 보장을 추구하는 5개년 전략적 종합계획”이다.
- 광특회계의 예산배분과 집행,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실행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전략계획이지만, 광특회계사업만으로는 삶의 질 보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을 망라한다는 관점에서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 따라서, 이 계획에는 삶의질 보장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광특회계 이외에도 분권교부세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자체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수입, 그리고 보조사업(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을 망라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6. 타 회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매우 방대해지는데, 어느 사업까지 포함해야 하는가?

- 종합계획이라 해서 모든 사업을 포함시키면 막대한 행정비용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 ① 5년 이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
- ② 당해 기초생활권이 추진하려는 모든 광특회계사업
- ③ 광특회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4번에서 언급한 중점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
- ④ 타 회계사업 중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삶의질 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⑤ 타 회계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7. 향후 계획수립 컨설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먼저, 계획수립 컨설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총괄하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무 주체로서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 컨설팅단에는 연구기관(국책, 사·도), 학계(지역개발학회 등), 유관기관이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 컨설팅은 정기컨설팅과 수시컨설팅으로 이루어지며 정기컨설팅은 지역의 계획수립 수요를 파악하여 가장 수요가 많은 시기(11월 초, 12월 말)에 2차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 실무자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당면하는 애로사항을 적기에 지원하게 될 수시컨설팅은 시·도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며 컨설팅 명단과 연락처를 배부하여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필요시에는 지역발전위원회 관련 직원들도 직접 시·군 현장을 방문하여 계획수립 자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8.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은?

-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포괄보조금 운용체계, 계획수립의 의의 및 중요성 등에 대한 내부교육을 추진하여 주관 부서와 사업부서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T/F를 운용하는 방식도 효과적이며 중기재정계획, 장기발전계획, 2010년 광특회계 사업계획서 등과 연계하되,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 및 전략, 중점과제 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T/F가 중심이 되어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가 반드시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정하기를 권고한다.

9.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매뉴얼에 소개하는 목차등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가?

- 반드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본 매뉴얼은 지침도 아니며 “실무자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개발한 Guide Book”으로 이해하면 된다.
- 본 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발전을 추구한다. 장기발전 계획과 같이 방대하거나 컬러 도면을 삽입 할 필요는 없으며 매뉴얼에서 소개하는 목차와 내용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수립하되, 우리 스스로 “진정한 지역발전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적극 권고한다.
- 아울러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중점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교육, 연계·협력사업 등은 별도 목차로 하여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10.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타 계획과의 관계는?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균특법에 근거를 둔 법정계획이다. 지역의 특화발전 및 삶의질 향상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며, 광특회계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의 배정과 집행을 전제로 하는 전략적 투자계획이다.
- 따라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나 부문별 또는 사업별 계획과는 위상에 차이가 있으며, 실천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 국토기본법상 시군종합발전계획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시·군도시계획과도 차이가 있다.
- 특히,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중점과제를 계획에 반영하여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질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 연계·협력사업, 리더양성등 역량강화 등 S/W 성격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1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의 실무적 작성 주체는?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단순히 비전 제시와 사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자체 내에 계획수립 T/F를 구성하여 실무적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칙적으로 자체 수립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외부 용역으로 계획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T/F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계획의 적합성과 실천성을 제고하며 지역의 특화발전사업을 포함시켜 획일적이고 무의미한 계획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아울러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욕구의 수립과정을 거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서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대표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협의·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12. 포괄보조금이란 무엇인가?

- 중앙정부 혹은 시·도가 시·군으로 이전하는 재원은 크게 용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정액보조금과 반대로 사전에 정한 용도에만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 특정정율보조금으로 구분한다.
- 보통교부세가 대표적인 일반정액보조금에 속하며 시·군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에는 장점이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등 재정자원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받는다. 반면에 특정정율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같은 것으로 사전에 용도가 결정됨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장점이 있으나 시·군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포괄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율보조금의 장점(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 신장)을 결합한 보조금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하나의 그룹으

로 묶고, 이 그룹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 즉, 포괄보조금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결코 아니며 국고보조금에서 출발하되, 용도 제한에 따른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사업 선택권을 확대한 보조금으로 이해해야 한다.

13. 이번에 도입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본구조는?

- 외형상 광특회계는 균특회계와 마찬가지로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계정 3개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광역발전계정은 시·도간 연계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광역경제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소관 부처가 국가적 관점에서 시·도의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 지역개발계정은 시·군·구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한다.

	균특회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③ 부처편성사업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포괄보조금 대상
광역발전계정	④ 부처편성사업	③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⑤ 시·도 자율편성사업 ⑥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⑦ 특행기관 이관사무 ⑧ 부처편성사업	④ 시·도 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 사업 포함)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14. 그렇다면 이번에 도입한 포괄보조금의 운용구조는?

- 지역개발계정사업은 그간 200여개에 달하였는데, 이를 19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5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재편하여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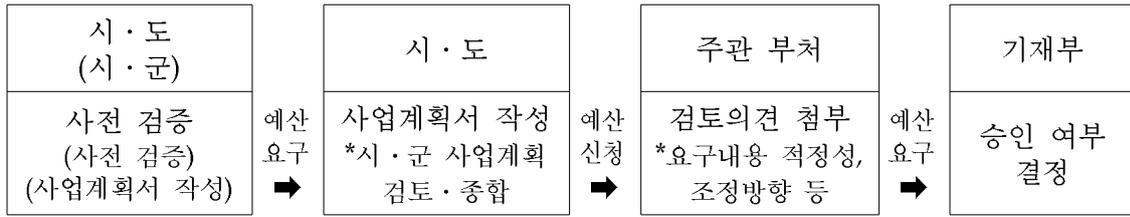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사업재편 이전 세부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②관광자원 개발	· 박물관, 문예회관 등(18개) · 문화도시, 관광지 개발(8개)
	문화재청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④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 운동장, 수영장 등(11개) · 문화콘텐츠센터 등(8개)
	농림부	⑤문화유산 관광자원화 ⑥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지역문화유산개발 등(5개) · 도농교류활성화 등(13개)
	농진청	⑦농어업기반정비 ⑧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발기반 정비 등(13개)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⑨산림경영자원 육성 ⑩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 휴양림, 수목원 등(4개)
	지경부	⑪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섬유패션산업 등(10개)
	중기청	⑫전통시장/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복지부	⑬청소년시설 확충	· 공부방, 수련시설 등(2개)
	환경부	⑭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⑮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생활용수공급 등(4개) · 자연환경보전 등(2개)
	국토부	⑯해양 및 수자원 관리 ⑰대중교통 지원 ⑱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⑲지역거점 조성지원	· 연안정비 등(3개) · 물류단지 지원 등(5개) · 가덕대교 건설 등(6개) ·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2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⑳성장촉진지역 개발	· 개축지구 지원 등(3개)
	행안부	㉑특수상황지역 개발	·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㉒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농림부	㉓일반농산어촌 개발	·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환경부	㉔도서지역식수원 개발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개)	

-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다시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시·군·구 직접수행 사업으로 구분되며, 어떤 사업을 시도가 직접 수행하고 시·군·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시도가 사업의 광역적 성격 및 성과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군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으로 구분하여 정책수단을 확보한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를 소관 부처로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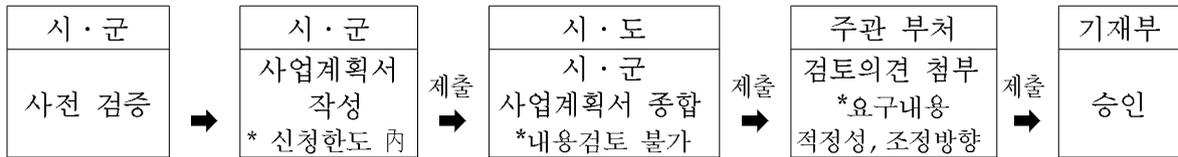
- 19개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각 시·도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며,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다.
- 5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소관 부처는 사업지침과 사후관리 등의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예를 들어 도시활력증진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국토해양부가 이들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구상을 강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정책구상과 포괄보조금의 운용방향에 입각하여 도시활력증진지역과 성장촉진지역에 속하는 시·군의 포괄보조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평가 등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해당 사업을 주관한 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A군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의 경우 A군은 당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앞으로 주관하게 될 국토해양부 모두가 정책협의 대상 부처가 된다. 이러한 구도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며 이후에는 성장촉진지역을 주관하는 국토해양부가 정책협의 대상이 된다.

15.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에 대한 예산 신청은?

- 지역개발계정이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신청 역시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
- 시도자율편성사업(19개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가 배분된 재원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 시군구자율편성사업(5개 포괄보조사업)은 시군구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각 사업별로 재정부처에서 인정한 국비지원 총규모를 초과한 예산 신청은 불가하다. 이 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예산신청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한다.



16.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

- 개정 균특법 제39조제2항에서는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지원규모와 보조비율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정적 인센티브는 시·군간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법령에 지원규모와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시·군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의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을 10%p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17.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이외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는?

- 균특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결과, 시·군·구 발전 정도, 예산집행의 실적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지자체의 회계운영 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도,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발전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보조비율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39조제2항에서는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이외에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세출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과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역 경쟁력과 투자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8. 배분된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선택의 자율성은?

-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인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의 지역개발사업에는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세부사업 기획은 자유롭게 하더라도 기초생활권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해당 사업군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나머지 시도자율편성사업인 6개 부문의 경우는 전적으로 기초생활권의 자율과 재량에 따른다.

19. 부문간의 경계가 모호한 사업들이 많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초생활권 재량으로 정책 부문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 그렇다. 다만, 추후의 사업추진실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정책부문을 담당하는 부처의 부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기초생활권의 여건과 특성에 비추어 적합한 정책부문을 결정하여야 한다.

20. 24개 사업군별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다른가?

- 그렇다. 이는 부처의 부문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매뉴얼등에서도 24개 포괄보조사업군별 매칭비율(국비 통합보조율)을 제시하였다.

21. 1개 단위사업의 예산 범위에 제약이 있는가?

- 그렇다. 부처의 부문계획에 예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22. 세부사업 기획 기능이 기초생활권에 있고, 포괄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안되는 사업’은 없는 것 아닌가?

- 모든 기초생활권 사업은 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시·도별 한도와 시·군·구별 한도 간에 상호조정은 불가하다.
- 또한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처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원제외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상세한 내용은 매뉴얼의 사업 부문별 고려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3. 24개 사업군은 칸막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기초 생활기반 구축 부문의 5개 사업군에는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19개 사업군에는 사실상 칸막이가 없다고 보아도 된다.

24. 24개 사업에 제시되지 않은 특수한 사업의 경우는 계획에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가?

- 전적으로 기초생활권의 자율과 재량에 속한다. 정책부문별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제시된 사업만이 아니라면 기초생활권에 판단에 따라 정책부분과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

25. 2010년 이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26. ‘성장촉진지역’은 어디이고, 추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 기초생활권을 지역특성별로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 농산어촌 등 3개 지역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다. 각 지역유형의 상세한 구분은 매뉴얼 부록을 참고하면 된다.
- 성장촉진지역은 3개 지역 구분과 별도로 인구, 재정, 소득, 접근성 등의 지표를 토대로 저발전지역을 선정하여 기초인프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이다. 성장촉진지역은 행안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선정하며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권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100% 국고보조를 하며, 여타 포괄보조사업(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신청 한도내에서 국고보조를 10%p 상향 적용이 가능하다.

기초생활권계획 체크리스트

(1)	신지역 발전정책 기초생활권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의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생활공감, 친서민 발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3차원적 국토발전(초광역, 광역, 기초)의 토대로서 기초생활권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보되어 있는가?√ 광특회계 지원 포괄보조(사업, 공간계획의 자율성 등)에 의한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이해가 확보되어 있는가?√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가운데 지역개발계정의 기초생활권 지원에 대한 인식은?√ 종래의 중앙주도적 유사, 중복, 분할적 사업추진에서 지역주도의 통합적 추진에 대한 이해는?√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신지역 발전정책에서 기초생활권 발전의 관계는 ?√ 발전의 사각지대로서의 기초생활권에 대한 현주소 인식은?	

(2)	기초생활권 계획의 수립체계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의 존재는? √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참여주체와 인력구성은? √ 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을 할 수 있는 채널이나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가? √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이나 수단의 가동은,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도는? √ 계획수립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는? √ 계획수립을 점검하기 위한 단체장 주도의 장치(업무성과 점검 등)는 어떤 것을 가동하고 있는가? √ 계획수립의 절차적 투명성은 ? √ 계획수립에 대한 관련부처 공무원의 참여수단? √ 계획수립에 대한 관련부처 공무원의 참여의 활성화 정도는 어떠한 수준인가? 	

(3)	기초생활권 계획의 체계 및 내용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전반적으로 체계성과 논리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계획체계가 고민과 노력의 산물인가? √ 지역의 여건과 특성(지역유형 등)과 부합하는 계획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 계획수립의 내용적 범위가 적합한가(포괄보조 7개 정책군, 24개 사업군과의 부합) √ 수립하고 있는 계획의 시간적 범위가 적정한가?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의 여건분석에서 주민의 수요과약은?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계획의 검토 및 지역의 잠재력 분석은? √ 지역의 특화발전, 창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상 및 발전목표가 추출되었는가? √ 추진전략은 미래상과 부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 협력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은?

(3)

기초생활권 계획의 체계 및 내용 ②

- √ 지역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계획은?
- √ 지역내 사업간 연계 및 복합화 계획은 존재하는가?
- √ 7개 부문별 사업의 계획이 포괄보조 사업편성 지침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 √ 계속사업의 선정 및 계획이 적절한지?
- √ 신규사업의 발굴 및 계획의 절차가 적절한지?
 - 발굴 및 계획의 적정성
- √ 개발한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성과 제시 등
- √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의 계획시 해당 지역의 지역구분에 부합되게 사업내용이 선정되고 계획이 되었는지?

(4)	기초생활권 집행계획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사업의 추진체계가 적정하게 구성, 제시되었는지? √ 협력사업의 추진체계가 적정하게 구성, 제시되었는지? √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는지? √ 계획한 사업의 투자재원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 자원조달의 주체는 적합한지? √ 5개년 기간별 자원투자 계획이 효율적,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 집행계획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는 구비되어 있는지? √ 계획추진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비하고 있는지? √ 사업추진 중간성과 시스템의 구비는? √ 초광역 개발권, 광역 경제권과 연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은? 	

제2주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상욱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주제발표 취지 및 목적

- 중앙정부는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유인하고 있지만, 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계획수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까지 제시된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수립 관련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남도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반영코자 함

2. 중앙정부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계획의 성격

- 자율성 확대라는 계획 수립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지방의 자율성 확보 미흡
 - 지자체별 포괄보조금이 평균 100-3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개별사업 추진시 해당 부처의 지침에 의거하여야 함
- ⇒ 지자체의 명확한 발전방향 설정, 정확한 수요파악,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추진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2) 계획수립 절차

- 다부처의 참여로 인한 통일된 계획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다단계의 추진절차로 인하여 행정처리기간 장기화 우려
 -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기재부, 농림부, 행안부, 국토부등의 부처가 참여함에 따라 각각의 부처별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
- ⇒ 종합계획으로서 계획수립요건상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되, 지자체 차원의 특성화된 목표와 전략제시 등 논리적 정연성 요구

- 계획의 변경요인 발생시 계획변경 절차 및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성 결여
 - 계획수립 후 추진과정 중 변수가 발생하여 긴급한 사안 발생시, 지자체에서는 재원확보 및 실행력이 담보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기존 사업을 사업자체를 폐지·변경하여야 하지만, 아직 중앙정부의 계획수립지침에는 계획변경의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변경 단계별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 ⇒ 중앙정부에 계획변경 사유와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시 요구 및 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의 완결성 추구

- 인센티브 및 평가관련 방향¹⁾만 제시된 상태로서 구체성 미흡
 - 정책인센티브와 평가인센티브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평가결과는 목표대비 성과 달성도가 주요 핵심이며, 현재 제시된 사업목표²⁾를 지자체에서 현실성이 미흡함
 - ⇒ 계획과정 중 전문가 자문 및 참여를 각 단계별로 실시하여 현실적합성을 제고토록 하며, 사업평가지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위주로 실시토록 중앙 건의

3) 계획수립 내용

- 지자체의 기획업무와 관련 실과간의 업무 협조 어려움 예상
 - 현재 시·군단위의 전략계획 및 종합계획은 시군 공무원의 자체 수립과 더불어 외부발주를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황
 - 계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계와 관련 실과간의 업무소통 및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함

1) 광특회계관련 인센티브 구조는 크게 정책인센티브와 평가인센티브로 분리·운용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이중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면, 기획재정부는 인센티브 부여하는 체계임

- 정책인센티브(기획재정부) : 지역발전 정책협조도,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광특회계 운영성과
- 평가인센티브(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지역경제활성화 실적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지역개발계정사업) 평가는 ①농산어촌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②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③문화·체육·관광진흥 ④시군구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이원체계를 중심으로 운용 예정

- 사업결과평가는 '목표대비 성과 달성도'와 '정량성과'로 구성
- 성과지표는 추진단계(신규, 계속)에 따라 배점 차등화
(출처 : 조기현, 농정연구센터 제195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2) 공통목표 : 신규유입인구, 체험등 방문객수, 참여가구 소득증가, 사업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등이며, 시군별로 필수로 작성
추가목표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설정하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
(출처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2009.10.)

⇒ 계획수립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기획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같은 형태의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토록 함. 또한 계획수립단계의 전담체제는 향후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의 조직으로 발전 구성·운영토록 함

○ 지자체내 사업의 규모화, Network화와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연계사업 발굴 및 시행시 장기간의 사업기간 소요 예상

- 중앙정부는 지자체내의 사업도 규모화하고, Network화하여 경쟁력을 키울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연계사업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하에 연계사업발굴 및 시행을 유인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지자체간의 연계사업을 단기간내에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의 사업기간 소요가 예상됨

⇒ 지자체간의 연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계사업 계획수립시 개별 지자체의 사업을 결정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역할이 중요함

○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중 지자체 의회와의 마찰 발생 예상

-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그 특성상 계획수립 단계부터 많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모아진 중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담보가 되어야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실현가능성을 높힐 수 있음
- 특히,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자체 의회와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데 한계를 노정할 수 있음

*예) 충청남도 균형발전계획(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의회의 의견 수렴과 계획제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

4) 사업추진

- 포괄보조금내 예산내의 한도적용에 규정에 따라 계획 투입 대비 지자체 가용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어려움 예상
 -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 외에 신규·전략사업의 추진시 예산 집행의 한계를 노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향후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향후, 5년간 투입가능한 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이에 맞춘 계획내용의 수정·보완되어야 함

- 계획수립 후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자체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예상
 - 사업대상지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주민의 계획포함 민원요구로 계획의 수정·사업비 증가로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 가중 농후
 - 사업기간중 사전단계(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시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 중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
- ⇒ 최대한 계획수립대상지를 공공용지를 우선하여 설정하며, 변경요인에 대한 가용예산을 추가로 설정하여 계획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의제처리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

3. 충청남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방향

1 지자체장의 명확한 발전방향 및 미션 확인

2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의회의 참여

3 기획과 사업부서간의 지속적인 협의

4 계획수립 단계별 충남발전연구원(컨설팅)과의 공조 유지

5 지자체의 투자 가용예산의 명확한 산출 및 적용

6 계획의 기본 요건을 충족 및 사업계획 구체화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

7 중앙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한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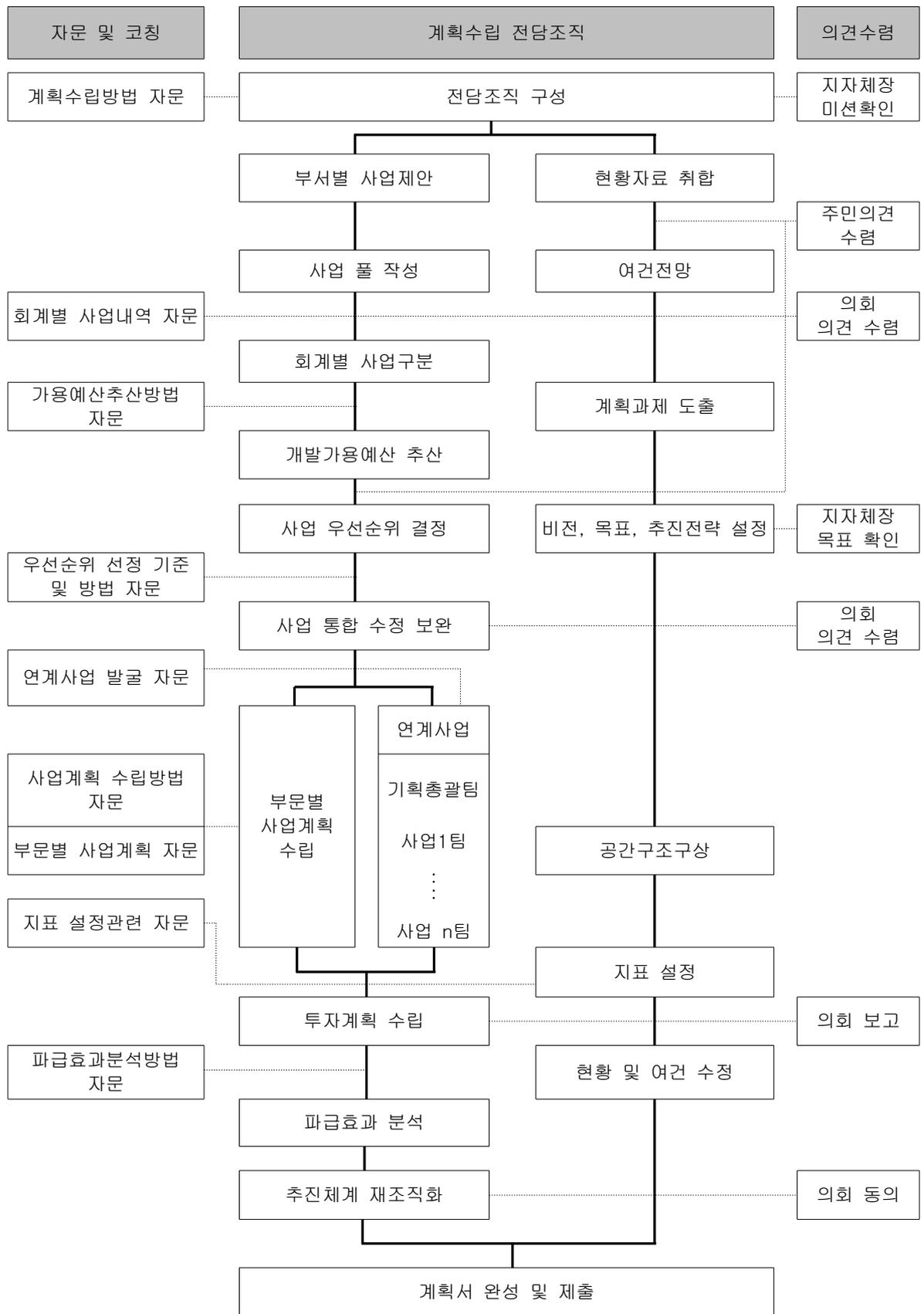
4. 계획수립 절차 및 방법

1) 계획수립 절차

○ 일반적인 계획 수립 방법 : 계획서 목차 순에 의한 계획 수립

- 현황 및 여건 분석→ 여건종합 및 계획과제 도출 →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추진전략별 주요사업계획 → 주요사업계획 수립 → 투자예산 산출 →가용예산 분석 및 재원확보방안→ 추진계획

○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단기간내에 최대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작성해야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립함(지역발전협의회 및 주요 절차 제외)



2) 주요계획 수립방법

(1) 사업계획 작성 양식 개선

<중앙정부안>	<개선안>
<p>■ 사업개요</p> <p>① 사업명</p> <p>② 필요성</p> <p>③ 성과목표</p> <p>■ 사업내용</p> <p>④ 대상지 위치</p> <p>- 사업 대상지의 위치(번지)를 지형도에 가급적 표기</p> <p>⑤ 개발여건</p> <p>-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특성, 지역여건의 구비여부, 유사 및 동일 사업의 과거 추진실적 등을 제시</p> <p>⑥ 사업내용</p> <p>- 사업의 기능,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세부내용, 운영방식 등을 명기</p> <p>■ 집행계획</p> <p>⑦ 사업기간</p> <p>- 단년도 사업의 경우는 00년, 다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시작시점(00년 00월)에서 완료시점(00년 00)을 기술</p> <p>⑧ 시행주체</p> <p>- 사업주체를 지방, 민간, 민관합동 등으로 구분하고 주체별 역할을 명기</p> <p>⑨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p> <p>- 총투자액 포함한 연도별 투자금액과 재원조달 방안을 국비(균특, 일반등),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고 구성비율(%) 표시</p> <p>- 금액 단위는 백만원</p> <p>⑩ 사업간 연계방안</p> <p>- 해당사업의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지역내 타부문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기술</p> <p>- 연계사업의 내용과 위치를 가급적 도면으로 제시</p> <p>■ 사업효과</p> <p>⑪ 개발효과</p> <p>- 예상되는 개발효과를 제시하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p> <p>- 가급적 생산유발 효과, 고용증대 효과, 지방세증대 효과, 지역발전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p>	<p>■ 사업명-사업별 코드 부여</p> <p>① 사업의 개요</p> <p>-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을 명시</p> <p>② 필요성 및 여건</p> <p>- 여건은 추진코자 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특징적으로 기술(내용적, 공간적 위계별로 기술)</p> <p>③ 기본구상</p> <p>- 본 사업계획을 추진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술</p> <p>④ 성과목표</p> <p>-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적목표와 성과목표를 기술 <BSC관련 지표를 활용></p> <p>⑤ 사업성 분석</p> <p>- 타당성 및 수요추정 (필요시 별도 기준 및 지표에 의해 실시)</p> <p>- 도입활동 및 시설규모 산정 (선정기준, 전국 및 우수사례 비교 검토, 도입시설 검토 및 규모 산정, 공간배치 구상)</p> <p>- 주요 협의 내용</p> <p>⑥ 사업계획(세부사업별)</p> <p>- 필요성 및 여건 / 기본방향 / 추진전략) - 동일</p> <p>- 주요사업내용</p> <p>·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 동선계획, 조경 및 식재계획, 공급시설계획, 부지조성계획 등</p> <p>- 투자계획</p> <p>·세부사업별 산출근거</p> <p>·재원별 사업비</p> <p>·연차별 사업비</p> <p>- 추진계획</p> <p>·추진방법(근거법령, 관계법령, 사업주체)</p> <p>·추진체계</p> <p>·추진과정(사전 및 사후 이행조치 등)</p> <p>⑦ 사업효과</p>

(2)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총괄표

- 중앙정부의 총괄표는 개선이 필요하며, 기획부서에서 총괄·조정하고, 확정함

<중앙정부 지침안>

사업유형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위치	투자액				우선순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속 사업	단독사업							
	협력사업							

<개선안>

구분	사업 유형	위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회계	소관부처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타			
총계												
부문	소계											
	사업명											

(3) 기타

- 사업군 분류에 있어 중복 해결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의 보조율
- 계획서 분량 : 200page내외

제3주제

기초생활권 컨설팅 자원단 소개 및 운영계획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관률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목적

- 새정부 신지역발전정책의 도입으로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사업은 포괄보조금 형태로 집행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2009년 12월까지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초생활권계획 및 사업성과를 통해 인센티브 및 우수모범사례 선정
 - 전체 포괄보조금의 10%p를 인센티브 형태로 부여할 계획에 있음. 또한 2010년 4월에는 우수 기초자치단체를 선발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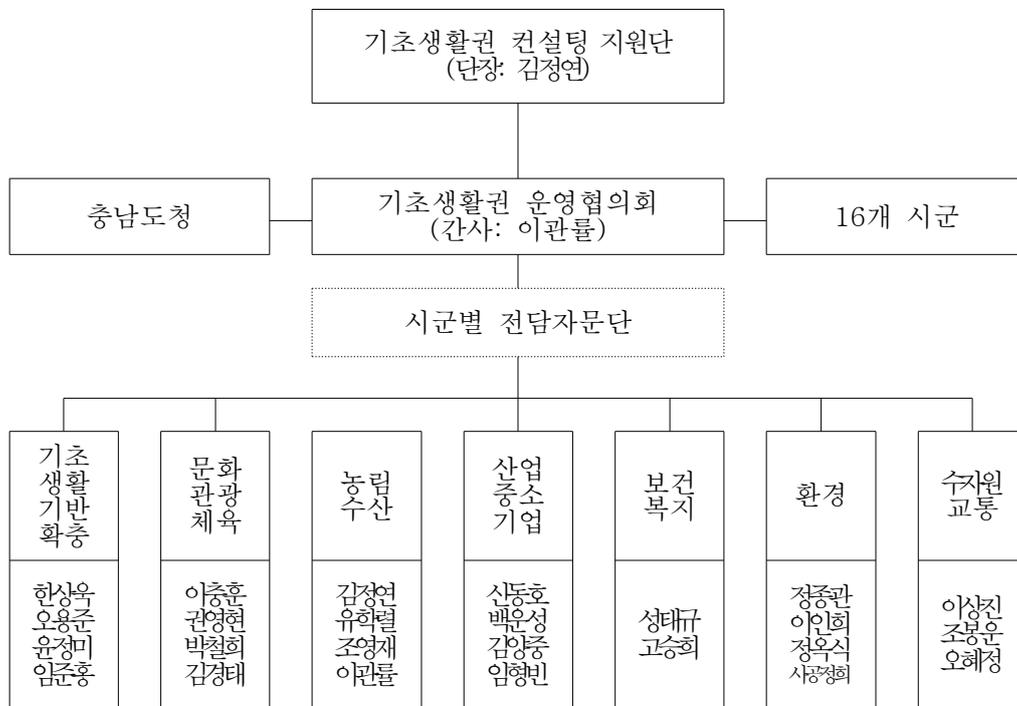
- 기초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의 정보 및 자원부족으로 계획수립 곤란
 -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예산, 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기초생활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

- 기초생활권계획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조직 설립 필요
 - 기초생활권 컨설팅조직을 구성하여 16개 시군의 기초생활권계획이 내실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2. 조직

- 기초생활권 컨설팅 지원단 구성
 - 기초생활권 컨설팅 지원단은 단장 1인과 간사 1인, 그리고 운영협의회 및 7개 포괄보조금분과로 구성됨.

-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성
 -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의 공동정책수요를 지역발전위원회에 건의
- 7개 부문별 분과 구성
 - 7개 부문을 기준으로 7개 자문분과로 구성토록 함.
- 16개 시군별 컨설팅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시군별 책임자 1인과 다수 참여자로 구성



주: 시군별 책임자 및 자문진은 pp. 42-43 참조

[그림 1] 기초생활권 컨설팅 지원단 구성도

3. 운영내용 및 방법

1) 주요 운영내용

- 기초생활권계획 및 포괄보조금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초생활권계획 및 포괄보조금제도에 관련된 전문교육프로그램의 자체 수행
- 지역별·부문별 전담자문진을 구성하여 수시로 컨설팅 지원
 - 지역별·부문별로 기초생활권계획 전담자문진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자문체제 구축
- 기초생활권계획 협력사업 발굴 및 성과지표 개발
 - 기초생활권계획에서 중시하는 협력사업의 발굴 및 성과지표와 DB 구축 지원
- 기초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 및 모범사례 발굴 세미나 개최
 - 기초생활권계획 의미와 지역발전의 활용방안, 시군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지역발전위원회 및 관련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지역발전위원회 및 관련전문가의 초청특강 및 자문위원 참여로 협력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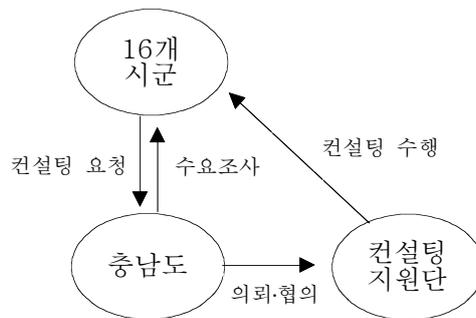
2) 운영방법

- 16개 시군의 공동 컨설팅 사항
 - 충남도와 컨설팅 지원단이 협의하여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

- 충남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컨설팅 지원단에 요청하고, 컨설팅과 협의하여 세부내용에 대한 대응

○ 개별 시군의 컨설팅 사항

- 개별 시군에서 필요한 컨설팅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 충남도(균형발전담당관실)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충남도가 해당 사항을 컨설팅 지원단에 의뢰하는 형태로 수행
- 실질적인 컨설팅 단계에서는 해당 시군이 컨설팅 지원단에 의뢰를 하고, 컨설팅 지원단과 충남도가 개별 시군의 의뢰사항에 대응하도록 함.



[그림 2] 기초생활권 컨설팅 지원단 운영방법

4. 세부운영계획

○ 기초생활권 정책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단 소개

- 대상: 충남도 및 16개 시군 관련공무원
- 내용: 충남도의 정책방향, 계획수립방법, 지원단 소개 및 운영방법
- 시기: 2009년 11월 중

○ 기초생활권 및 포괄보조금제도 정책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상: 16개 시군 관련공무원

- 내용: 주요정책내용, 계획수립방법, 계획운영방법, 협력사업 및 성과지표 등
 - 시기: 충남도 및 시군과 협의
-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지원 컨설팅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내용: 기초생활권과 관련한 충남차원의 컨설팅 조직 구성·운영
 - 방법: 시군별로 컨설팅분야 전담요원이 대응
 - 시기: 수시
- 기초생활권 협력사업 발굴 및 성과지표 개발
- 내용: 전담컨설팅 지원단에서 시군별 협력사업 발굴 및 성과지표 개발
 - 방법: 지원단 차원의 공동대응 및 시군별 전담컨설팅 팀별 개별대응
 - 시기: 연중 상시
- 기초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 및 모범사례 발굴 세미나 개최
- 내용: 기초생활권 우수사례 발굴에 대응한 충남차원의 모범사례 발굴 및 정책 홍보화
 - 방법: 기초생활권 모범사례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홍보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 시기: 2010년 3월
- 지역발전위원회 및 관련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내용: 전담컨설팅 지원단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풀 구성 및 활용
 - 방법: 정책교육프로그램 및 자문컨설팅, 세미나 참석
 - 시기: 2009년 11월

5. 주요 컨설팅 분야

- 현황분석 및 전망
 - 생활권분석, 인구전망 등
- 사업의 성과목표 및 DB 관리
- 사업성과평가
 - 비용편익분석, 파급효과분석 등
- 개발가용예산 추산
-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체계화
- 계획서 전반의 일관성 및 합리성 제고

6. 기초생활권 컨설팅 지원단 연락처

구분	성명	연구원	휴대폰	E-mail
단장	김정연 박사			
간사	이관륵 박사			
시 부	천안	조봉운 박사		
	공주	유학렬 박사		
	보령	조봉운 박사		
	아산	이관륵 박사		
	서산	박철휘 박사		
	논산	윤정미 박사		
	계룡	성태규 박사		
군 부	금산	조영재 박사		
	연기	임준홍 박사		
	부여	한상욱 박사		
	서천	한상욱 박사		
	청양	한상욱 박사		
	홍성	박철휘 박사		
	예산	오용준 박사		
	태안	박철휘 박사		
	당진	오용준 박사		

7. 시군별 기초생활권 컨설팅 지원단

구분	책임	지역참여	공동참여(경제, 관광, 환경)		
시 부	천안	조봉운	임준홍, 윤정미	[지역개발-지원단장] 김정연	
	공주	유학렬	오용준, 한상욱		
	보령	조봉운	임준홍, 한상욱		
	아산	이관률	윤정미, 오용준, 임준홍 조봉운, 한상욱		
	서산	박철휘	조봉운, 오용준, 임준홍 한상욱		
	논산	윤정미	이관률, 한상욱		
	계룡	성태규	고승희, 한상욱, 조봉운		[경제] 신동호, 백운성, 김양중 임형빈
군 부	금산	조영재	이관률, 한상욱	[관광] 김경태	
	연기	임준홍	오용준, 조봉운, 한상욱		
	부여	한상욱	박철휘, 임준홍		[환경] 이상진, 정종관, 이인희 정옥식, 오혜정, 사공정희
	서천	한상욱	오용준, 고승희		
	청양	한상욱	성태규, 유학렬, 조영재		
	홍성	박철휘	오용준, 조봉운, 한상욱		
	예산	오용준	조영재, 조봉운, 한상욱		
	태안	박철휘	성태규, 오용준, 조봉운 한상욱		
	당진	오용준	조봉운, 박철휘, 한상욱		

[부록 1]

포괄보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이관률 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보조금제도는 기초생활권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포괄보조금의 사업군이 총 24개(19+5)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보조금의 액수가 너무 작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포괄보조금의 평균 액수가 100~30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지방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도입되는 기초생활권제도 및 포괄보조금제도는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정부는 사후평가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기본원칙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포괄보조금 및 기초생활권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기초생활권 및 포괄보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기획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보조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발굴, 기획, 집행 및 사후평가의 정책전반에 관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정책기획역량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제시·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기초생활권계획의 사후평가를 통해 포괄보조금 한도액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사후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포괄보조금의 사후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농정연구센터 제195회 월례세미나 토론요지입니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생활권 및 포괄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정책에 대한 Q&A를 작성하여 정책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과 전담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기초생활권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전제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정부가 해당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목록화 및 개별 사업간의 연계도를 작성하여 사업간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기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TOWS 분석과 Mind Map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도출과 우선순위화 및 연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정부는 인근의 자치단체와 공동협력하는 사업을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 큰 매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자치단체간 연합을 결성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는 기초생활권 및 포괄보조금 도입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성과지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록 2]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와 지자체의 대응전략**

조기현 박사(지역발전위원회)

1. 포괄보조금 인센티브제도

- 포괄보조금은 ① 연계·협력사업, ② 시·군·구 자구노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운용할 방침임
- 먼저,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및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통합보조율을 10%p 인상함. 또한, 둘 이상의 시·군이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함. 이를 위하여 지역개발계정사업의 평가체계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집중·통합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개선하였음¹⁾. 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예정임. 반대로 성과부진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세출구조조정 의무이행을 요구할 방침임

2.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운용방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라 2010년부터 지역계정의 지자체별 예산 한도 외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 ‘09년도 지역개발사업 평가 역시 부분적이거나 포괄보조금 운용방식에 대응하여 시험 적용
 - ‘10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포괄보조금 체계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편 작업을 진행 중

** 본 자료는 농정연구센터 제195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중 일부 내용입니다.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개발계정사업을, 지식경제부는 지역혁신계정사업을 평가함에 따라 평가기관의 빈번한 교체와 이로 인한 평가체계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웠음

- 광특회계 관련 인센티브 구조는 크게 정책인센티브와 평가인센티브로 분리·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위는 이 중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면, 기획재정부는 인센티브 부여
 -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은 신규로 도입하는 평가제도로 기획재정부 주체 하에 운영

<표-1> 광특회계 차등지원제도 개요(2010년도)

평가항목	평가주체	구분	평가지표	시행근거
정책인센티브				
지역발전 정책협조도	재정부	계속	물가안정노력등 지역정책협조 실적	령 제42조5호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재정부	신규	성장촉진지역사업, 공동사업추진복합시설사업 신청실적	법 제39조②
광특회계 운영성과	재정부	계속	집행실적, 효율적 운영등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령 제42조4호
평가인센티브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지역위	계속	광역경제권 시행계획의 효과성·효율성	법 제39조① 령 제42조2호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재정부	신규	법인세·부가세 징수실적 등 지역경제활성화 노력	법 제39조③ 령 제42조2호

3.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지역개발계정사업) 평가방향

- 사업목적 및 성격에 부합되는 핵심 지표 중심으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이원체계 중심으로 운용
 -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고, 사업이 목적 지향적으로 설계·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지표(Baro-meter) Pool 도출
 - 정량지표는 계량화 가능성 및 측정 현실성을 고려하며, 사업간 객관적인 성과평가치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량수치의 상대비교 표준화
- 사업의 유형화는 목적 지향적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해 정량지표 Pool을 구축하여 시행
 - 지역개발계정은 19+5 사업체계를 ① 농산어촌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②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③ 문화·체육·관광진흥, ④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단순 유형화

- 광역발전계정은 5개 사업군(R&D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 인력양성 및 대학지원, 기업지원, 커뮤니티 육성)으로 유형화

<표-2> 지역개발계정 사업군별 평가 유형(안)

유형	지역개발계정 사업군
① 농산어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농어업기반정비 • 농촌지도자사업화 활성화 • 산림경영자원 육성 •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기반 지원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②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해양 및 수자원관리 • 대중교통지원 •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 지역거점 조성지원
③ 문화·체육·관광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관광자원개발 • 체육진흥시설 지원 •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청소년시설 확충
④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활력증진지역·성장촉진역·특수상활지역·일반농산어촌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지역개발계정사업 성과평가는 ① 사업결과와 ② 지역기여도로 대별됨
 - 사업결과 평가는 ‘목표대비 성과 달성도’와 ‘정량성과’로 구성함
 - ※ 지역기여도는 정성지표인 ‘지역발전기여도 및 확산효과’로 측정
 - 성과지표는 추진단계(신규, 계속)에 따라 배점 차등화
- 사업결과의 정성지표인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와 지역기여도 정성지표인 ‘지역발전기여도 및 확산효과’는 공통·의무 적용함
- 반면에 사업결과의 정량지표는 개별사업 또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지표화

<표-3> 사업 추진단계별 배점기준

구 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기 획	30	20
집 행	30	30
성 과	40	50

- 5등급 구간으로 척도화 하되, 정성지표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등으로 구분하며 정량지표는 점수 구간을 설정하여 상대평가하는 방식을 검토 중임
- 예컨대 농산어촌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정량평가는 지역특화단지 면적 증가율, 지역 특화단지 방문객 증가율, 공동시설 입주(가동)율, 지역주민(기업) 입주율, 지원대상 사업자 매출 증가율, 지원대상 산업 매출 증가율, 지역특산품 판매 증가율 등을 적용할 수 있음

<표-4> 농산어촌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량평가지표(예시 안)

평가지표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부진 (1)
지역특화단지 면적 증가율 (공통)	* 지역특화단지 : 당해 사업으로 조성하는 각종 단지, 공원시설 등 * 동일사업 타 지자체 및 당해 지자체의 지역특화단지 면적증가율 3년 평균과 비교하여 배점				
지역특화단지 방문객 증가율 (선택)	* 동일사업 타 지자체 및 당해 지자체의 지역특화단지 방문객 증가율 3년 평균과 비교하여 배점				
공동시설 입주(가동)율 (선택)	* 동일사업 타 지자체 및 당해 지자체의 공동시설 입주(가동)율 3년 평균과 비교하여 배점				
지역주민(기업) 입주율 (선택)	* 지역주민(기업) : 입주 시점 2년 이내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기업) * 동일사업 타 지자체 및 당해 지자체의 지역주민(기업) 입주율 3년 평균과 비교하여 배점				
지원대상 사업자 매출 증가율 (공통)	* 동일사업 타 지자체 및 당해 지자체의 지역주민(기업) 매출 증 가 율 3년 평균과 비교하여 배점				
지원대상 산업 매출 증가율 (공통)	* 동일사업 타 지자체 및 당해 지자체의 지원대상 산업 매출증가 율 3년 평균과 비교하여 배점				
기 타	지역특산품 판매 증가율(공통)				

- 농산어촌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성평가 항목인 지역기여도 평가방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5> 농산어촌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성평가지표(예시 안)

평가지표	100점-91점	90점-81점	80점-71점	70점-61점	60점 이하
인구변동을 (공통)	* 당해 지자체 3년간 인구증가율과 타 지자체 3년간 인구증가율 비교·평가				
고용증가율 (공통)	* 당해 지자체 전반적인 고용증가율 및 타 지자체와 동일사업 고용증가율 비교·평가(최근 3년간)				
지역경제 기여도 (공통)	* 당해 지자체 GRDP 증가율 및 타 지자체와 동일사업 GRDP 증가율 비교·평가(최근 3년간)				
기 타	지역인지도 향상을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효과(공통)				

제4주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관련 종합토론

